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 (무배당)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약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기초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자"라 함은 제6조 (보험계약자)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 장래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입니다.
- 2.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5.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 금을 말합니다.
- 6.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라 납입하는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7.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8.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수탁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9.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0.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1.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2.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즉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단체 및 가입자단체)

-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가입자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가입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자)

- 이 계약의 계약자는 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제7조 (가입자의 자격)

- ①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제8조 (가입자의 추가가입)에 의한 추가 가입시 가입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가입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가입이 되지 않았던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가입자단체에 추가 가입자의 가입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가입자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이하 "추가 가입일"로 합니다)로 하며 그 추가 가입일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9조 (가입자의 탈퇴)

계약자는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가입자를 가입자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퇴직연금제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연금규약의 제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 체결시 회사에 연금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보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보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부담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기관)

- ①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 및 변경, 급여 지급, 적립금의 이전 및 해지, 제21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의한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제 수수료(이하 "운용관리수수료 등"이라 합니다)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하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 계약의 수행업무)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정·운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 등의 지급
-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수행 하도록 정해진 업무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① 회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 및 제38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서 정하는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펀드유형별로 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15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목적
- 2. 운용방법의 종류
- 3. 운용방법별 이율 적용에 관한 사항
- 4. 수수료에 관한 사항
- 5. 기타사항
- ② 제1항의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 1항 각 호(제4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부담금에 대하여 각각의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운용방법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1항에서 선택한 운용방법 및 부담금 편입비율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은 운용방법의 해지환급금 지급 및 부담금 납입 절차를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계약해당일로부터 년미만의 경과된 기간 해 당하는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년미만 의 경과된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연동형에서 계약일부터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시점에 동일 자산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금리연동 형Ⅱ에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 경과기 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이율보증형에서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시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이 적 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제42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변경요구일+8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현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8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24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금리연동형 II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이율보증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 가격조정률(별표1)이 적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금리연동형Ⅱ의 중도해지이율 및 이율보증형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해지시 구비서류)

계약자가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 2.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가입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받을 회사의 가입자명부 사본
- 3. 기타 계약자가 해지 및 자산관리계약의 이전 등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0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계약자로부터 가입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21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표준부담금은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2. 보충부담금은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3. 특별부담금은 재정검증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 등의 평가를 통해 적립금이 법규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4.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23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형퇴직연 금제도 계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 삼성생명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무배당)을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 ④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및 이율보증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4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글로벌혼합형의 경우는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8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산출하고, 기준가 적용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립금 운용방법별 적용이율(단, 실적배당형의 경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게 해당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2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7조 (소멸시효)

가입자의 급여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또는 부담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8조~제29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8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금리연동형 기준이율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직전 3개월간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2 + 지표금리×1) ÷ 3

③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29조 (금리연동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 ① 금리연동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8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개월이상 ~ 1년미만인 시점에동일 자산관리기관의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해지이율(이하 "중도해지이율"이라 합니다)은 「적용이율×80%」를 적용합니다. 단, 적용이율및 중도해지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30조~제31조는 금리연동형 II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 II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0조 (금리연동형 II 적용이율)

① 금리연동형Ⅱ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별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로 합니다.

1. 납입 1차년 적용이율: 지표금리(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로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기준이율의 80%~최대 195% 범위내에서 부담금 납입일에 결정합니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기준이율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A1×0.7 + A2×0.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 : 회사의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기준이율 >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1 + 지표금리×1) ÷ 2

-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시점의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1 년동안 확정 적용
- 2.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 간 확정 적용
- ③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31조 (금리연동형 II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 ① 금리연동형Ⅱ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해지이율(이하 "중도해지이율"이라 합니다)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납입 경과기간이 1년미만은 「2.0%」, 2년미만은 「적용이율 1.5%」, 3년미만은 「적용이율 1.0%」, 3년이상은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의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제30조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합니다. 단, 적용이율 및 중도해지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32조~제34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2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에 대해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별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3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① 이율보증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금리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지방채 수익률)로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 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규모에 따라 기준이율의 80%~최대195% 범위내에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단,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율보증형 1,2,3년형의 경우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1년만기/2년만기/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 5년형의 경우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을 혼합한 이율을 말합니다.

* 1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7 + A2×0.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7 + A2×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6 + A2×0.4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 A1×0.6 + A2×0.4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③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전체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제34조 (이율보증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 ① 이율보증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산출시 적용되는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은 제33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적용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단,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 (별표 1 참고)이 적용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35조~제42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실적배당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36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 기구로 운용할 경우 투자자그룹(이하 "클래스"라고 한다) 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체계 등 을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출합니다.
- ③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④ 계약자는 제17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38조 (실적배당 형 펀드의 유형)에 규정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8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밸류혼합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 런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 의 90% 이내, 저평가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2. 그로스혼합형 :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3. 자산배분혼합형 :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 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4. 글로벌혼합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편드 재산의 90%이내, 미국, 유럽, 일본, 이머징마켓 및 한국 등 글로벌주식 [해외주식시 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주식예탁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포함합니다] 및 글로벌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펀드재산의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 5. 인덱스혼합형: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드 재산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투자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 6. 일반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국내 투자적격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 7. 단기채권형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특히, 채권은 편입일 현재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국채 2년 이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2년 이하) 등에 투자합니다.
- 8. 채권형 :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투자합니다.
- 9. 인덱스주식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200지수)을 목표지수 (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 10. 삼성그룹주식형: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부분은 삼성그룹 계열 종목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증권 (ETF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상기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9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 기구로 운용할 경우 투자자그룹(이하 "클래스"라고 한다) 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체계 등 을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출합니다.

③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률이 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0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자산 특별계정 운용보수

제41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 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2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17조 (계약자의 운용방법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43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 (인감신고)

- ① 계약자는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 또는 서명날인이 이미 제출된 인감 또는 서명날인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 또는 서명날인 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4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가입자 및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급여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급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급여를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
- 2. 계약자 및 가입자로부터의 지시, 청구, 통지,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업무
-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의한 사무처리 업무
- 4.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시 보험업법 및 관계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 7. 기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5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9조 (금리연동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제31조 (금리연동형Ⅱ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제35조 (실적배당형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제35조 (실적배당형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2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3조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 (비영업일 포함)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비영업일 포함)이 경과한 첫영업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30일 (비영업일 포함) 이내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④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률이나 규정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 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 지화급금으로 합니다. 단. 급여의 지급인 경우 및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4항에 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frac{1 + i_j}{1 + i_h}\right)^{n + \epsilon/\eta}$$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frac{1 + i_j}{1 + i_h + 0.5\%} \right)^{n + \epsilon/\eta}$$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변경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 n. : 365 또는 366

② i; :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점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③ i,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소 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Γ 전여보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i_h = i_{hl} + $(i_{hl}$ - $i_{hl})$ imes m' / (12 imes n') 잔여보증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i_h = i_{hl}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

·iы: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 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ilm :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 시점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 (월미만 절상)

3.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